

『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1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7년 2월 28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3월 2일

라. 상정일자 : 2017년 3월 10일

제21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경제통상국장 박 종 우

나. 제안이유

- 기술력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·벤처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투자기관이 참여하고 전문 투자 회사가 운용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출자를 통해 성장잠재력이 큰 유망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·육성

- 이에 2017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출자금을 반영하고자 「케이앤 지방상생1호 투자조합」 출자 여부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○ 출자개요

- 대상기관
 - 기 관 명 : (주)케이앤투자파트너스
 - 대표이사 : 김철우
 - 소 재 지 :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2길 13 예동빌딩 9층
 - 설립근거 :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제10조
- 출자예정액 : 금800,000천원 (2차년도)
 - ※ 2016년도 600,000천원 출자금 기 납부(1차년도)
- 출자근거
 -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4조제5항
 - 「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 제20조

○ 사업개요

- 조 합 명 : 케이앤 지방상생1호 투자조합
 - 한국모태펀드 2016년 2차 정시 출자사업(지방기업) 선정 조합
 - 결성근거 :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제20조
 - * 한국모태펀드 : '05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100% 출자한 정부투자기관인 한국벤처투자(주)가 운용(조성규모 2조7천억원)
- 운 용 사 : (주)케이앤투자파트너스

◦ 출 자 자

- 특 별 조 합 원 : 한국모태펀드
- 유한책임조합원 : 경상북도, 구미시, 구미대학교 산학협력단,
강외철(개인투자자), 알앤씨(관내 기업)
- 업무집행조합원 : (주)케이앤투자파트너스

◦ 조합결성액 : 100억원

- 연도별투자계획 (단위:백만원)

구 분	계	2016년	2017년	2018년
계	10,000	3,000	4,000	3,000
한국모태펀드(국비)	5,000	1,500	2,000	1,500
경 북 도	1,000	300	400	300
구 미 시	2,000	600	800	600
강 외 철	800	240	320	240
구미대학교 산학협력단	500	150	200	150
알 앤 씨	200	60	80	60
운 용 사	500	150	200	150

◦ 존속기간 : '16. 12. 28 ~ '24. 12. 27(8년) *출자금 납부 : 3년

◦ 투자대상

- 구미·경북 소재 중소·벤처기업
- 타지역 중소·벤처기업(관내 유치 목적)

◦ 운영방법 : 투자상담회 수시개최, 투자보고회 반기개최

- 기대효과
 - 지역경제 환경변화를 견인하는 다양한 전략사업 지원으로
지역 경제활성화, 일자리창출, 외부기업 유치 등
- 추진경과
 - '16. 4. 29 한국모태펀드 출자사업 공고
 - '16. 6. 27 지방상생펀드 운용사 최종선정
 - '16. 12. 21 설립출자금(1차년도 6억원) 납부
 - '16. 12. 23 결성총회
 - '16. 12. 28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록(중소기업청)
 - '17. 1. 17 사업 및 투자설명회 개최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,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제10조,
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제20조,
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4조제5항,
「구미시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 제20조
- 예산조치 : 2017년 1회 추경예산편성(8억원)
-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건 호

○ 본 동의안은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17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2차년도 출자금을 반영하고자 사전에 시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써
-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·벤처기업 지원 및 기계, 자동차, 디스플레이, 모바일 등의 기존 산업과 최첨단 신기술을 연계한 융합 산업을 육성하고자 정부투자기관이 참여하는 전문 운용 펀드사에 출자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